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15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 박정현 • 박해철 • 박균택

김동아 · 김 윤 · 서미화

조승래 • 한창민 • 박홍배

위성곤 • 문진석 • 이학영

김재원 · 노종면 · 이재정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으로 소방학교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방청 직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와 시·도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학교가 있음.

그러나 중앙소방학교와 시·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학교는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로 명시되어 교육훈련 대상·내용에 따른 명칭사용의 다양성·확장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본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소방학교장 정원이 필요함.

따라서 교육훈련기관 설치 이전에 소방청과 사전에 개교 등을 협의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을 "소방 공무원 및 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소방교육훈 련"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제20조(교육훈련) ①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	
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	<u>소</u>
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방공무원 및 관계법령에 의한
<u>소방학교를</u> 설치·운영하여야	소방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
한다.	<u>기관을</u>
②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	② <u>소방교육훈련</u> -
<u>무원의 교육훈련</u> 을 위한 교육	
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소방청과 사전</u>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